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34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주문 및 제안이유	1
1. 주문	1
2. 제안이유	3
III . 검토의견	4
1. 주요내용	4
2. 주요내용 검토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민 외 13인
2. 제 안 일 : 2025. 3. 7.
3. 회 부 일 : 2025. 3. 10.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주 문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1,000회를 맞이한 수요시위를 기념하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건립되었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과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와 인권의 상징물로 자리했고, 미국, 독일, 호주, 필리핀,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 건립되었다.

2018년 12월 14일,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도의회 내에 건립하여,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인류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실현할 더 큰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2020년 9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 직후부터 일본 정부의 꾸준한 철거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국회 독일 방문단’을 구성해 현지를 직접 찾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바,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를 기리고, 국제사회에 일본군 전시 성폭력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된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평화의 소녀상이 지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 제안이유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고통 받은 여성들의 인권을 기리는 상징물임.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서 인식되고 있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음. 또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군대라는 폭력을 동원한 국회 침탈을 겪었음. 이때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촉구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확산시키며,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와 인권 가치지향적인 국회로 거듭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주요내용

이해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에 일본군 전시 성폭력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된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평화의 소녀상이 지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주요내용 검토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거리 투쟁을 이어온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염원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現 정의기억연대)에 의해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공식적으로 세워졌으며¹⁾,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모 및 기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오고 있음.

1) [참고자료 1] 평화의 소녀상

현재 국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155개가 설치²⁾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건립주체는 민간단체³⁾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5개 중 62개(44.3%)임⁴⁾.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추진건립단을 구성하여 2018년 12월 14일에 경기도의회 본관 입구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⁵⁾한 바 있음.

또한, 민간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에는 2025년 7월 기준 10개국에 35개의 평화의 소녀상 등이 설치⁶⁾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 평화의 소녀상 설치 현황(2025.5. 기준) >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총계
개수	23	3	3	2	6	3	1	1	36	6	14	13	16	7	11	1	9	155

자료: 여성가족부

3) <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체(2025.5. 기준) >

구분	민간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학교, 개인 등)
건수	136개	10개	12개
비율	87.7%	6.5%	7.8%

* 건립 주체 중복 포함(3)

자료: 여성가족부

4) [참고자료 2] 140개 지자체(시·군·구) 중 62개(44.3%) 지자체 관련 조례 운영(2025.5. 기준)

* 주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형태로 제정·운영 중

5)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 평화의소녀상 제막식 개최행사참석(2018. 12. 14. 경기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자료: <https://www.ggc.go.kr/site/lwmkr/board/lawmakerpressrelease/231358>)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단장 김봉균의원)은 14일 도의회 1층 정문 앞에서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10대 도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건립하게 된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인권과 명예 회복,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건립되었다. 이번에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되는 소녀상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처음 소녀상이 설치된 날을 기념하여 7주년이 되는 12월 14일에 제막식을 진행하였다.(이하 생략)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해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건립 방해와 함께 이미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외교력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⁷⁾

2020년 9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4년 9월 미테구청장으로부터 평화의 소녀상 철거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⁸⁾ 이에 재독 한인 시민단체(코리아협의회)가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2024. 10. 15.)하였고, 2025. 9. 28.까지 현(現) 위치에 존치하라는 가처분 결정(2025. 4. 16.)이 있었음⁹⁾.

6) <해외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평화비(소녀상) 건립현황(2025. 7. 기준)>

(단위: 개수)

구분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합계
기림비· 평화비(소녀상)	4	2	1	2	16	1	2	5	1	1	35

※ 소녀상 형태 16개, 소녀상+a인 형태 : 5개, 그 외 비석 형태 등 14개
자료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7)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792호),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79호) 검토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9쪽

8) [참고자료 3] 독일 베를린 미테구 내 평화의 소녀상 설치 후 경과

9) 2024년 9월 국회에서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를 위하여 방문단이 독일을 방문하였음 (방문 목적 :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방지 및 해당 상징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보존, 독일 정부·연방의회 및 베를린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공식적인 철거 반대 의사 전달, 독일 내 한인 사회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제2879호)」과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제1792호)」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임.

이에 결의안은 국제사회에서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촉구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에 일본군 전시 성폭력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된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평화의 소녀상이 지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려는 것임.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상징물로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물로 전 세계에서 인식되고 있는 바, 국내 외 평화의 소녀상 건립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군 전시 성폭력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주문 제1호는 대한민국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조속히 건립

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결의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결의의 주체인 “대한민국 국회”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결의의 주체와 평화의 소녀상의 건립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촉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건립할 것을 촉구하며”라는 문구를 “건립하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결의안의 제명(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도 이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주문 제2호는 대한민국 국회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를 기리고, 국제사회에 일본군 전시 성폭력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데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를 기리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평화의 소녀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임을 분명히 하고”¹⁰⁾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결의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인권을 기리는 상징물이라는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국회 경내에 소녀상을 건립할 것인지는 국회 구성원들이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10)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해민의원실의 취지를 반영함.

외교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외교부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체가 대부분 민간단체이므로,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라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¹¹⁾.

문 의 처

02)6788-5650

11) 외교부는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노력해오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기리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자 한다는 결의안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추모·교육이라는 목적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어온 경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특히, 해외에서 설치되는 평화의 소녀상의 경우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의 메시지에 공감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움직임을 통해 건립·보존되어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간 정부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라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아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자료 1] 평화의 소녀상



자료: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https://womenandwar.net/remembrance>)

【참고자료 2】 평화의 소녀상 해외 설치 현황¹²⁾

※ (기준) 2024.9.20.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외 소녀상

연번	설치 시기	설치주체	지역
1	13.07월	가주한미포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 공원
2	14.08월	미시간 위안부소녀상 건립위원회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시 디트로이트 한인문화회관 내
3	15.08월	불명	중국 하이룽장성 하이린시 한중우의공원내 역사전시관
4	15.11월	화성시 평화의소녀상 추진위원회, 토론토시 한인회	캐나다 토론토시 한인회관 입구
5	16.08월	시드니 소녀상 추진위원회	호주 시드니 애쉬필드 연합교회
6	16.10월	화성시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제2차대전사 보존연합회, 상하이사범대	중국 상하이 상하이사범대학내 위안부역사박물관 인근
7	17.03월	독일 평화의소녀상 건립 수원시민 건립추진위원회, 독일 평화의소녀상 독일추진위원회	독일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 인근 빈젠트의 네팔- 히말라야 파빌리온 공원
8	17.06월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	미국 애틀랜타 브룩헤이븐시 블랙번 시립공원
9	17.10월	뉴욕한인회	미국 뉴욕주 맨해튼 한인회관내 한인이민사박물관(MOKAH)
10	19.02월	개인	필리핀 보라카이 파나이섬 북부 카티클란 인근 사유지
11	19.10월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원회	미국 버지니아주 에너데일 한인타운
12	19.11월	멜번 평화의소녀상 건립위원회, 화성시 평화의소녀상 건립위원회	호주 멜번 한인회관 입구
13	20.03월	코네티컷 평화의소녀상 건립위원회	미국 코네티컷주 한인회관 입구
14	20.03월	라인마인 한인교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한인교회 정문
15	20.09월	코리아협의회	독일 베를린 중앙구(미테구)내 교차로
16	23.03월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관 부지
17	24.06월	정의기억연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스탄티노시

※ 자료: 외교부

12)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792호),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79호) 검토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2쪽

[참고자료 3] 평화의 소녀상 관련 조례 현황(2025.05. 기준)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조 례	관리대상 소녀상
1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2	고창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3	공주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1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5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
6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1
7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
8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1
9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10	구미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11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12	군포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1
13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14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15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16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17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1
18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	1
19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20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3
21	부여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22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조 례	관 리 대 상 소 녀 상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26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조례	1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	1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3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
35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36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37	순창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38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조례	1
39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40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조례	1
41	여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42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43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44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45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46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1
47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48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1
49	임실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50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조 례	관 리 대 상 소 녀 상
51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52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53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54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55	충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56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및 지원 조례	1
57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58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59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60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1
합 계		62

주 1) 부산시의 경우 남구, 부산진구, 동구에 3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조례로 제정·운영

주 2) 가나다 순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4] 독일 베를린 미테구 내 평화의 소녀상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20. 9. 28.	설치 및 제막식 ※ 코리아협의회 주도, 미테구청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허가
2020. 10. 7.	미테구청, 철거 명령 공식 송부(∼10.14 기한) ※ 당시 미테구청측, 소녀상의 비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 하였으나 해당 비문이 독일-일본 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바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
2020. 10. 12.	코리아협의회, 독일 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 철거명령 집행 정지
2020. 12. 1.	미테구 의회,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위한 결의안 통과
2021. 7월	코리아협의회, 소녀상 설치 1년 허가 연장 신청 / 미테구청 수용
2022. 11월	미테구청, 2024년 9월 28일까지 2년 허가 연장
2024. 6월	미테구청장, 2024년 9월 28일 이후 소녀상 철거 방침 구두 통보
2024. 9. 19.	미테구의회, 소녀상 설치 용인 촉구 결의안 및 주민청원 채택 ※ 구의회 결의는 권고적 성격
2024. 9. 24.	미테구청장-코리아협의회 대표 면담 ※ 소녀상 사유지 이전 등 대안 관련 의견 교환
2024. 9. 30.	미테구청장, 코리아협의회 측에 소녀상 철거명령 통지문 공식 송부 (10월 27일까지 철거 또는 이전 최종 통보)
2024. 10. 15.	코리아협의회, 법원에 가처분신청 제기
2025. 4. 16.	행정법원, 2025. 9. 28까지 현(現) 위치 존치하라는 가처분결정

자료: 여성가족부